

2011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2011.12

목 차

직무발명에 대한 소개	1
□ 의의 및 현황	3
□ 제도의 필요성 및 근거규정	4
□ 직무발명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혜택	8
직무발명제도 우수 운영사례	11
□ 탐엔지니어링	13
□ 마이크로인스펙션	20
□ 테스	28
□ 평산에스아이	38
□ 포티스	43
□ 주식회사 나라기계제작소 (일본)	49
부록	55
직무발명 모델규정	57
Q&A로 알아보는 직무발명제도	73
❖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73
❖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권리와 의무	83
❖ 예약승계규정	91
❖ 보상금의 산정과 지급	95
❖ 직무발명을 둘러싼 다툼의 해결	105
❖ 기타	110
직무발명 관련 규정	113

직무발명에 대한 소개

직무발명에 대한 소개

□ 의의 및 현황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¹⁾ 직무발명에서의 ‘발명’은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임

기술의 복잡화 및 융합화에 따라,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즉, 조직화되고 충분한 자본을 가진 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면서, 개인 발명에 비해 직무발명의 비중과 가치가 점점 증대하고 있음

직무발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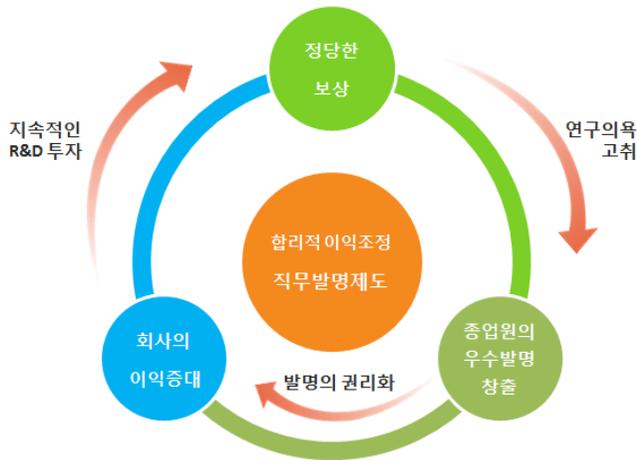
구분	'05	'06	'07	'08	'09	'10
개인발명(A)	24,368	27,062	32,189	33,443	35,588	33,267
직무발명(B)	136,553	139,127	140,280	137,189	127,935	136,834
계(C)	160,921	166,189	172,469	170,632	163,523	170,101
비율	84.9%	83.7%	81.3%	80.4%	78.2%	80.4%

[특허청]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제도의 필요성 및 근거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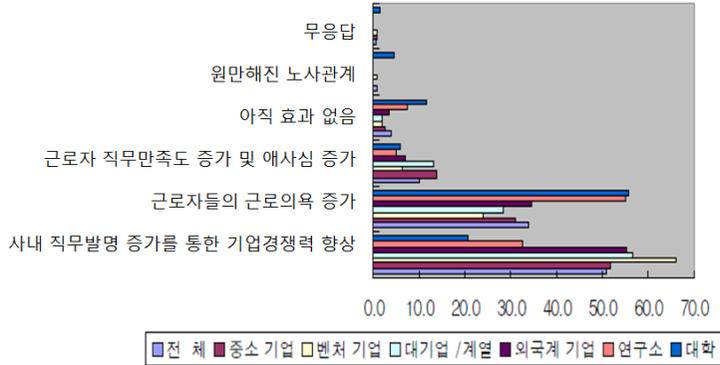
현대사회의 발명형태는 개인중심의 발명형태로부터 기업 등 조직적인 발명형태로 이행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의 귀속관계가 문제되는데, 직무발명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발명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한 사용자등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업에서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2006년에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그 동안 미비했던 점을 개선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가 발명진흥법에 의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운영되게 되었음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의욕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직무발명 보상실시로 얻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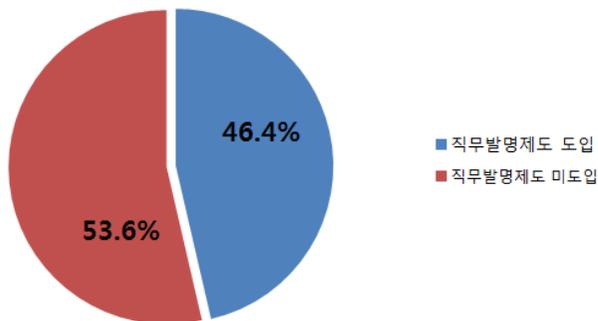


<출처 : '06.12.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조사(특허청)>

상기 특허청 통계에서와 같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체, 대학, 연구소의 경우 사내 직무발명 증대를 통하여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답하였음

또한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회사에서 적절한 보상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답변은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많았는데, 이는 직무발명제도가 획일적인 급여제도로 인한 직원들의 근로의욕저하와 이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임을 보여 주는 것임

이러한 선순환 효과는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 증가 및 애사심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후술하는 우수사례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례와 인터뷰가 언급되고 있음



<출처 : 직무발명제도 도입기업 현황,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1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그러나 직무발명제도는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의 난해함 ㉡기업의 획일화된 경영방침 ㉢근로자가 직무상 발명한 것은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연구개발자 아닌 다른 직무담당자들과의 형평성 등과 같은 이유로 도입률이 일본(2007년, 86.7%) 등에 비해 저조한 형편임

하지만,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우수 운영기업의 사례에서 처럼,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직원)에게는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사용자(회사, 연구소, 대학)에게는 종업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이용한 경쟁력 강화, 매출신장, 기술 축적,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물론, 임금 이외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도를 먼저 도입한 회사의 사장님들의 설문결과

①기업경쟁력 향상

②직원들의 근로의욕 증가

③애사심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해,

회사의 발전에 직무발명제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작은 투자로 회사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회사에서 지볼해야 하는
비용만 늘어나지 않나요?
도입효과가 무엇인가요?

직무발명 보상효과

기업 경쟁력 향상

근로 의욕 증가

애사심 증가

기술 축적

기업이미지 제고



□ 직무발명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혜택

가. 정부 세액공제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의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종업원(발명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기업에 승계하여 받는 보상금(“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종업원(발명자)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기업)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

기업(사용자)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사용자(기업)

직무발명 보상 지급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나.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아래에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 등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가점 부여 대상 사업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직무발명제도 우수 운영사례

직무발명제도 우수 운영사례

□ 탑엔지니어링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3번지

홈페이지 : www.topengnet.com

설립일 : 1993년 11월 13일

대표이사 : 김원남, 류도현

주생산품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제조업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03년

주요연혁 : 1993.11 법인설립

2003.01 코스닥 신규등록 (자본금 44억원)

2004.11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9.11 3천만불 수출의탑 수상

2010.05 제45회 발명의날 국무총리단체표창

나. 주요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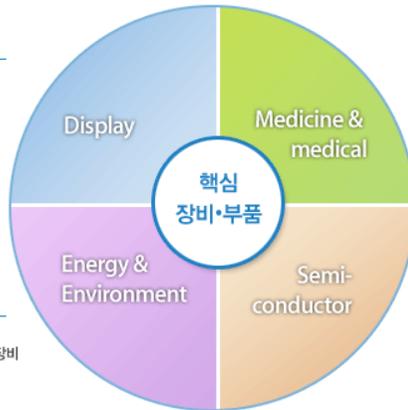
■ Business Domain

Display 장비

TFT-LCD, AMOLED 및 차세대 Flexible & 투명 Display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 장비

Energy & Environment 장비

이차전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공정 장비



Medicine & Medical 장비

제약 설비 및 의료진단장비, 고령친화의료기기 & 시스템

Semiconductor 장비

초고속, 고정밀 반도체 Packaging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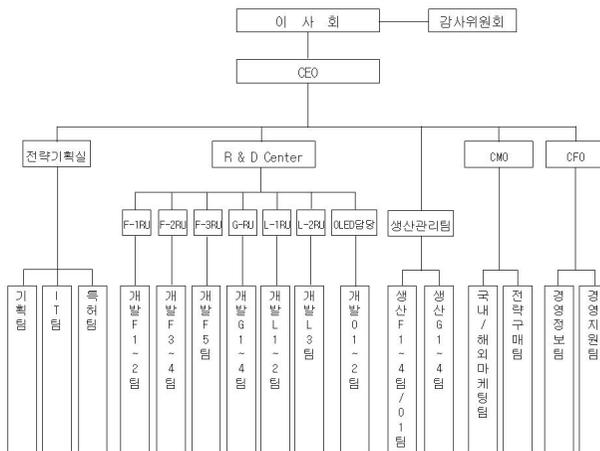
탑엔지니어링은 1993년 회사를 설립, 반도체 장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LCD 및 LED 장비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LCD Dispenser 장비는 2008년 세계 1등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였고, 2009년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었으며, GCS (Glass Cutting System), Array Tester 등 LCD 핵심공정 장비와 LED 장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2015년 명실상부한 Global Top-10 종합 장비업체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반도체 및 LCD, LED 장비 국산화로 획득한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반도체, LCD 및 LED 산업에서 요구되는 신기술의 창출과 연구개발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인 Global Superior Company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 특허전담부서의 설립과 운영

주식회사 탑엔지니어링의 특허 전담조직은 2005년 6월에 신설되었고, 현재 총 4명으로 구성되어 발명유도 및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특허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1,556건의 발명제안이 있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이전에 총 발명제안 건은 170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 특허전담부서 신설 및 직무발명제도 도입 이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이후 발명제안은 1,386건)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탐엔지니어링이 진행하고 있는 특허출원은 국내 551건, 해외 586건이며, 등록된 특허는 국내 242건, 해외 164건입니다.

특허교육 실적

탐엔지니어링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특허교육인 ‘e-learning’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시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변리사 및 특허청 심사관을 초청하여 오프라인 특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명자 미팅 진행시에도 참석한 변리사들과 발명자간 특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함으로써 효과적인 특허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심판 및 소송사건에 발명자들에게 참관을 유도하여 실제 특허사건의 심각성을 고취시킴으로써 특허 활성화 및 특허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라. 직무발명 보상실적 및 보상사례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실적

발명의 제안, 특허 등의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등에 관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엔지니어링에서는 출원 및 등록 보상에 관하여 재직 발명자뿐만 아니라, 퇴사한 발명자에게도 별도 연

락을 취하여 철저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보상기준

- 출원보상 : 특허 100,000원, 실용신안,디자인,상표 50,000원
- 등록보상 : 100,000원 (단, S등급은 상한 없음)

② 보상실적

- 출원보상 : 총 54,861,000원
- 등록보상 : 총 49,500,000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사례

탐엔지니어링의 직무발명 우수 사례 중 한 건은 LCD 디스플레이의 도포장치에 관한 것으로, 초기 장비에 적용되어 그 기술 우수성을 고객사로부터 인정받았고, 매출액 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발명의 발명자들에게 등록보상 및 실시보상금을 산정하여 발명자에게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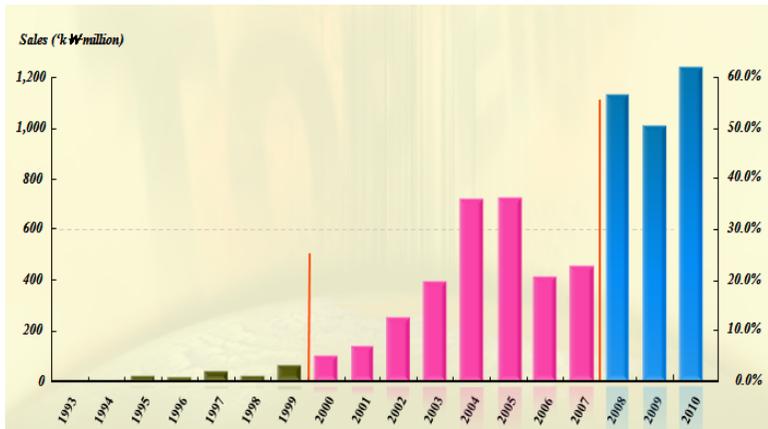
또한, 2005년 이후부터 매년 발명왕 및 발명 노력상을 선발하여 해당 발명자에게 일정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발명제출이 우수한 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는 아래 표와 같이 직무발명 제안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아울러 탐엔지니어링의 기술보호는 물론 관련 시장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년 도	접 수	국 내		해 외		합 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1	123	33	14	31	33	64	47
2010	164	69	27	109	55	178	82
2009	294	99	29	111	42	210	71
2008	241	104	48	109	13	213	61
2007	146	44	72	91	13	135	85
2006	286	111	34	79	4	190	38
2005	195	51	11	24	4	75	15
2004	52	15	2	28	0	43	2
2003	42	16	1	4	0	20	1
2002	7	1	0	0	0	1	0
2001	4	4	4	0	0	4	4
2000	0	0	0	0	0	0	0
1999	2	2	0	0	0	2	0
1998	0	2	0	0	0	2	0
합 계	1556	551	242	586	164	1137	406

탐엔지니어링의 매출은 LCD 사업의 발전에 발 맞추어 증가해 왔으며, 직무발명제도를 시행했던 2005년부터는 급격한 매출액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 있었던 LCD 사업 침체를 벗어남과 동시에도 많은 매출액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매출액 상승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해외시장 진출에 의한 매출액 성장으로, 당시 해외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었던 특허장벽을 해결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허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축적하고 다양한 특허컨설팅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탐엔지니어링은 특허전담부서 창설 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직무발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우수한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게 되었고, 안정적인 매출과 회사의 고도성장을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 마이크로인스펙션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9-11 대륭테크노타운7차
2,3층

홈페이지 : www.microinspection.com

설립일 : 2000년 1월 17일

대표이사 : 은탁

주생산품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및 부품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06년

주요연혁 : 2000.01 법인 설립

2000.04 국민창업투자(주) 투자유치

2001.05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주관기업 선정

2002.12 삼성SDI 협력업체등록

2003.01 ISO9000 인증획득

- 2003.02 LG전자 협력업체 등록
- 2004.08 INNO-BIZ 업체선정
- 2005.06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록
- 2009.02 기술신용보증기금 KIBO A+ Members 선정

나. 주요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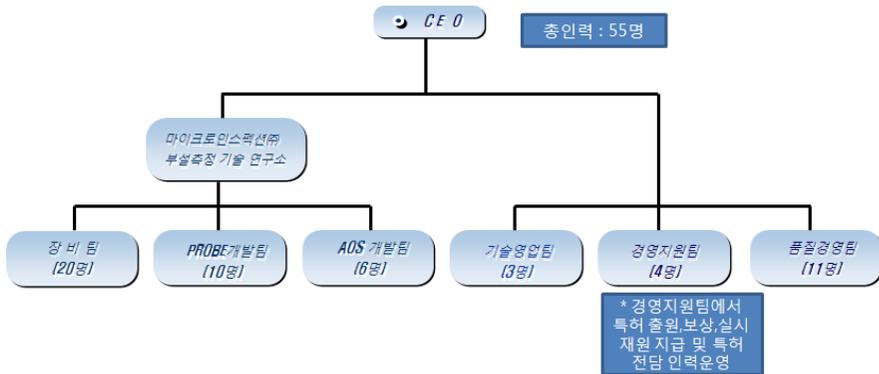


마이크로인스펙션은 구부러지는 PCB의 일종인 칩온필름(COF)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한 회사입니다. PDP 패널 전자검사장비(AEI) 전문업체인 마이크로인스펙션은 COF 검사장비를 개발 완료하고 LG마이크론과 스템코에 양산 공급하는 등 활발한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COF는 TV·휴대폰 등의 곡면 회로에 들어가는 범용 부품으로, 일본의 에이또와 OHT 등에 의존해왔던 기술을 국산화하고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인스펙션은 COF 검사장비에 독자 개발한 '볼 프로브' 기술을 적용해 탐침이 회로를 하나씩 찍어가며 합선여부를 시험하는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핀 프로브' 기술을 채택했던 기존 외산 장비보다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검사 정밀도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²⁾ 마이크로인스펙션의 대표자인은

탁 사장은 '외산 제품보다 최고 배나 비싼 가격이지만 볼 프로브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쟁쟁한 해외 경쟁사들을 제칠 수 있었다'면서 COF 검사장비를 주력 사업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 회사구성 및 특허보유 현황



마이크로인스펙션은 엔지니어 컴퍼니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종업원의 우수한 발명이 창출되어야 회사의 이익이 발생되고 또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종업원들의 연구의욕이 고취되어 더 많은 발명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인스펙션은 총 인원 55명의 작은 벤처기업이지만 70% 이상의 인력이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6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였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함으로써 2006년 이후 특허출원이 아래와 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 전자신문, “마이크로인스펙션, COF검사장비 첫 상용화”, (2008.05.08)

구분	국내출원	국내 등록	해외출원	해외등록
2006	5	3		3
2007	7	3	15	1
2008	3	3		2
2009	8	1	3	4
2010	4	3	2	1
2011	2	4	1	6
계	29	17	21	17

라. 직무발명 보상실적 및 보상사례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규정

마이크로인스펙션의 직무발명 보상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보상 : 등급에 따라 적용. 25만원 (C등급) ~ 100만원 (S 등급)
- 등록보상 : 등급에 따라 적용. 50만원 (C등급) ~ 200만원 (S 등급)
- 실시보상 : 실시 보상의 재원은 영업이익과 세전이익 중 적은 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운영(단, P/S 지급 총액을
- * 실시 보상금은 한 프로젝트당 영업이익과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특허의 기여도(가중치)를 평가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 * 기여도 평가시에는 한 특허당 누적한도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한 특허당 누적한도 최고 보상액은 1억원이다.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실적

마이크로인스펙션의 직무발명 보상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허 출원 및 등록 보상금
2006년	4,400,000
2007년	5,050,000
2008년	2,500,000
2009년	3,250,000
2010년	5,350,000
2011년	5,000,000
합계	25,550,000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사례

마이크로인스펙션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COF Leakage Tester 장비는 마이크로인스펙션의 2010년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였고, 수익률이 40% 이상이 되는 우수한 장비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삼성, LG는 기존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장비를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나, 마이크로인스펙션의 제품이 출시된 이후 일본장비보다 훨씬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인스펙션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인스펙션의 COF Leakage Tester 장비가 일본장비가 검사하지 못하는 부분도 검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이크로인스펙션 소속 엔지니어의 우수한 연구개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실시 보상이 지급된 이후 엔지니어의 기술역량이 크게 향상되었고, 엔지니어의 마인드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인스펙션의 COF Leakage Tester 장비에는 총 5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특허가 관련되어있으며, 이 특허들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인스펙션이 해당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액은 총 197,426,046원입니다.

마.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1) 마이크로인스펙션의 우수연구인력을 유지

특허실시 보상 기준이 제정이 된 이후, 마이크로인스펙션 소속 엔지니어의 이직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우수한 엔지니어를 유지시키는 것은 마이크로인스펙션 같은 벤처기업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직무발명 보상금이 지급이 된 이후부터는 P/S 이외에 실시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수한 엔지니어의 퇴사는 '0'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마이크로인스펙션 경영지원팀 김미선 팀장은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마이크로인스펙션의 우수한 엔지니어를 유지시켜주는 제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2) 개발기간 단축

마이크로인스펙션의 각 프로젝트별 개발기간이 전반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으로 마이크로인스펙션 소속 엔지니어의 근무의욕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비하여 1/3

이상 개발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전후로 동일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치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에 대비하여 월등히 짧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3) 개발 성공률 증가

실제 제품에 실시되어 이로부터 이익이 나와야만 실시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인스펙션의 엔지니어들은 단순한 인사평가의 가점을 받기 위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제품개발 위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성공률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난이도가 높은 과제일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그만 둘까? 하는 마인드에서 어려운 과제일수록 성공하면 특허 등록률이 높고 실시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인드로 변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고난이도의 실용적인 제품개발의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4) 특허 유지비용 절감

마이크로인스펙션의 경우, 연간 특허출원율이 가파르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실용적인 특허 위주로만 출원/등록을 하기 때문이며, 과거에는 특허가 될 만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출원/등록을 해왔다면 지금은 특허의 실용도를 측정하여 이에 따라 출원/등록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의 질이 향상되었고 특허 출원/등록의 유지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5) 회사 이미지 향상

엔지니어의 기술등이 향상됨으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마이크로인스펙션의 이미지는 기술력 있는 회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는 기술력 있으며, 우수한 엔지니어를 많이 확보한 회사로 인식된 상태입니다.

6) 회사의 매출향상

구분	회사 당기순이익	실시보상		이익대비 실시보상 비율(이익/실시보상)
		건수	금액	
2008년	1,679,518,547	4	152,454,699	9.1%
2009년	270,431,807	4	7,801,394	2.9%
2010년	2,309,472,149	13	190,621,980	8.3%
합계	4,259,422,503	21	350,878,073	8.2%

직무발명제도 도입 후 마이크로인스펙션이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과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테스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640-1

홈페이지 : www.hites.co.kr

설립일 : 2002년

대표이사 : 주송일

주생산품 : 반도체 증착 장비(PE-CVD) / 건식 세정 장비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06년

주요연혁 :

2002. 09 : (주)테스 설립

2003. 09 : ISO9001:2000 인증획득

2005. 01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20051020호)

2007. 02 : Challenger, 300mm PECVD ACL 장비개발

2008. 05 : 코스닥증권시장 상장

- 2008. 09 : TESLAR5X T/F Solar Cell PECVD 장비개발
- 2008. 10 : ISO14001:2004 인증획득
- 2009. 04 : Cubic300, 300mm Dry Cleaning 장비개발
- 2009. 11 : CIGS Solar Cell 장비개발
- 2010. 01 : Challenger HT, 300mm PECVD 장비개발
- 2010. 01 : HIT2G Solar Cell PECVD 장비개발
- 2010. 02 : ISO9001:2008 인증획득

나. 특허전담부서의 설립과 운영

특허전담부서의 연혁

주식회사 테스는 2007년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인력을 채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에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주식회사 테스는 증가하는 직원들의 연구개발 결과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2008년 전담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였고 IP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후술할 매출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IP팀을 신설하면서 매출과 양질의 신기술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전담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기존의 IP팀을 지적재산팀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테스는 2007년 말에 IP 관련 전담인력이 입사한 이후 관련 규정 및 제도를 확립하여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직무발명심의 기구 구성, 실적보상 및 처분보상의 실시 예정 및 인사평가시 특허 출원(등록) 건의 반영, 아이디어 워크샵을 통한 적극적 특허 발굴 등을 실시하여 직무발명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워크샵 실시

발명자로부터 직무발명신고서를 접수한 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 기술이 없으면 출원을 진행하는 수동적인 출원시스템은 전략적으로 경쟁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테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명을 창출·개량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분기별로 정기적인 아이디어 워크샵을 개최하여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테스의 아이디어 워크샵은 지적재산팀과 현업 부서의 엔지니어, 특허사무소 담당자가 사외(워크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내 개최는 지양함)에서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로서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TRIZ 기법 등의 보다 유용한 방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테스의 이와 같은 아이디어 워크샵을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략 30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진행되어 회사의 지적재산권 확보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워크샵에서 특허 교육도 함께 병행하고 있어 특허제도에 대한 발명자의 인식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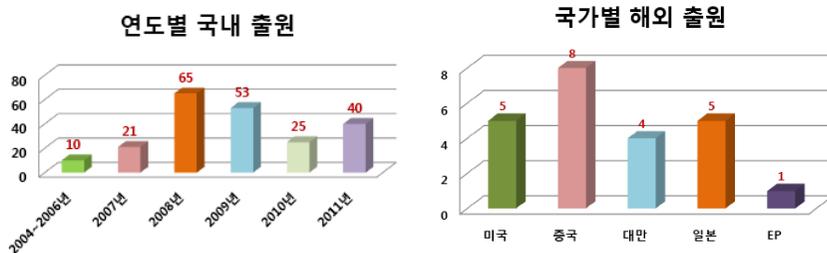
특허교육의 적극적인 실시

2008년 이전에는 별도의 특허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다양한 특허교육이 실시되어 연구원의 특허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 2008년 : 전자산업진흥회의 특허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무료 특허교육 과정을 신청하여 분기별로 연구원을 대상으로 특허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클레임 해석 및 회피 설계/특허분쟁대응 전략/특허검색 방법 등입니다. 또한 특허청에서 수행하는 민간 IP 컨설팅 지원 사업의 내용으로 영업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특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2009년 : 특허청에서 수행하는 IP R&D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특허교육 실시하였고, 지적재산팀에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특허 검색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 2010년 : 유료 검색 DB사용 관련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특허 검색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다.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

출원현황



2007년 이후 IP 전담인력의 확보에 따라 특허출원 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테스의 주요 생산품은 반도체 장비로서

B2B 상품(Business to Business)에 해당되므로 상대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에 출원이 집중되었습니다. 해외 출원 역시 반도체 장치를 생산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에 집중되어 해당 시장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등록현황



주식회사 테스에서 1999년에 등록된 5건은 외부로부터 양수받은 특허이며, 자사의 특허 Portfolio 강화를 위하여 향후에도 필요한 기술과 특허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주식회사 테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는 82건이며 2008년 이후 출원된 다수의 건이 심사를 거쳐 등록되고 있습니다.

라. 직무발명 보상실적 및 보상사례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실적

① 출원 및 등록 보상금

2008년 이후 출원 및 등록 보상금을 대략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출원종류	보상금액
출원	국내	특허(S 급)	250,000
		특허(A 급)	200,000
		특허(B 급)	150,000
		실용신안	150,000
		디자인, 상표	100,000
	해외	특허(S 급)	400,000
		특허(A 급)	300,000
		실용신안	200,000
디자인, 상표		150,000	
등록	국내	특허(S 급)	700,000
		특허(A 급)	600,000
		특허(B 급)	500,000
		실용신안	400,000
		디자인, 상표	250,000
	해외	특허(S 급)	800,000
		특허(A 급)	700,000
		실용신안	600,000
디자인, 상표		350,000	

상기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식회사 테스는 타사에 비해 직무발명 보상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하여 발명자의 발명은 적극 장려되었고, 2008년 이후 출원 건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② 실적 및 처분보상

2009년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출원 및 등록보상과 별도로 실시 및 처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요 보상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보상금액
실적보상금	A 급	15,000,000
	B 급	10,000,000
	C 급	5,000,000
처분보상금	실시권 허락으로 인한 수익 발생시	실시수입금(Royalty)의 5~10%
	특허권의 양도시	양도대금의 5~10%

현재까지 실적보상 및 처분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11년 연말에 실적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주식회사 테스의 사업 확장 및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지면 실적보상 및 처분보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③ 인사평가제도에 반영 예정

주식회사 테스는 2012년 인사평가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1년에 출원 및 등록된 건을 인사평가지 반영할 예정입니다. 가산되는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항목		점수/회	적용한도
가점	내부 포상	특허(실용신안) 출원	0.2(0.1)	최대 2점적용
		특허(실용신안) 등록	0.5(0.2)	

인사평가와 직무발명을 연관시킴으로써 보상금과는 별도의 발명의 동기 부여를 줄 수 있어 향후 지재권 확보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사례

주식회사 테스는 2008년 하반기부터 non-plasma type의 건식 식각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유사한 기술에 대해 선진 경쟁사인 T社에서 장비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T社의 특허(공정이 별도의 챔버에서 진행) 및 장비를 분석한 결과 이와 차별되는 기술(별개의 공정을 동일 챔버에서 진행)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IP 확보를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기술에 대한 수요가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식회사 테스는 고객사에 T社의 장비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당사의 독자적인 IP 확보 부분을 홍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테스에서는 관련 경쟁사인 T社의 특허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이디어 워크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특허를 발굴하여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기술개발을 통해 2010년 170억, 2011년 3/4 분기 현재 249억 매출을 올리고 있어 주식회사 테스의 주력 사업분야로 발전하였습니다. 위 기술에 대한 IP 확보 현황은, 출원중인 특허 10건, 등록된 특허 6건, 등록된 상표 1건입니다.

마.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주식회사 테스가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한 결과로 얻은 대표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 지식재산권 확보

2008년 이후 다양한 방법(교육, 아이디어 워크샵)으로 직무발명을 발굴 및 권리화를 진행하여 현재 82건의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의 안정성 확보

최근 들어 고객사 측에서 장비 및 공정 관련 IP 보유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면책(inmemnification)을 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진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 또는 개량할 수 있는 특허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출원하여 특허분쟁과 관련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주식회사 테스는 2009년부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발명의 출원 여부, 등급 결정, 기술 공유 등을 목적으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직무발명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 검토 및 평가 실시 • 상호 의견교류를 통한 기술적인 지도 및 특허 출원 활성화에 기여 • 해당 발명에 대한 출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 • 기술 공유로 인한 회사 기술력 향상에 기여
<p>구성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사장 • 위원 : 각 팀의 임원 및 팀장(10명 이내)
<p>운영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기술 개발 회의 시(월 1~2회 실시)
<p>운영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 접수 시 지적재산팀에서 선행기술을 검색, 특허성 여부에 대해 1차적으로 판단 • 지적재산팀에서 직무발명신고서와 검색된 선행기술을 심의위원회에 전달 • 심의 시 지적재산팀에서 해당 발명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시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함 • 심의위원회는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여부 및 발명의 등급을 결정 • 출원 불가일 경우 해당 발명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

□ 평산에스아이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엔드빌딩 6차
601호

홈페이지 : www.pyungsan.co.kr

설립일 : 1991년

대표이사 : 이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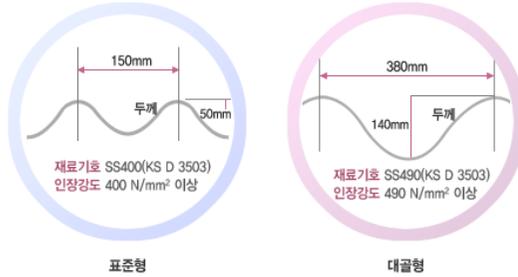
주생산품 : 파형강판, 제조업, 건설업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04년

- 주요연혁 :
- 1991.02 평산공영(주) 설립
 - 1998.05 ISO9002 인증 획득
 - 2000.12 기업부설연구소(평산기술연구소) 설립
 - 2001.06 우량기술기업 선정 - 기술신용보증기금
 - 2001.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 2008.12 서울국제발명특허대전 금상 수상
 - 2010.12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수상

나. 주요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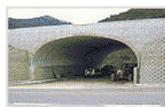
평산에스아이의 파형강판은 3.2~8.0mm 두께의 일반구조용 강판에 주름(파형)성형을 하여 단면계수가 같은 두께의 강판보다 10~50배로 단면성을 증대시킨 구조용 건설용 재료입니다.



평산에스아이의 파형강판은 현장에서 볼트 연결만으로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어 공정관리가 용이하며, 공기단축(35%이상), 공사비절감(30% 이상)이 가능하며, 용융아연도금을 적용하여 내구성능을 100년 이상을 확보 할 수 있어 유지관리비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복개터널



라멘교대체



통로



수로



소교량



저류시설



가교 및 가도



군시설물

또한, 재활용이 가능하며,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저탄소배출 구조물로서 국가시책인 저탄소 정책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건설용 재료입니다.

다. 특허전담부서의 설립과 운영

평산에스아이는 세계 최고의 파형강판 제작기술과 설계 및 시공 능력을 보유한 회사로서,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발명을 토대로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제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평산 에스아이는 2004년도부터 발명제안제도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현재 104건(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기술력 향상을 통해 원가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이루었습니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11
실용	출원	-	2	-	3	-	7
	등록	-	-	-	-	1	2
특허	출원	5	3	9	7	6	13
	등록	-	-	7	9	9	1
계	출원	5	2	9	10	6	20
	등록	-	3	7	9	10	3

라. 직무발명 보상실적 및 우수사례

① 보상기준

- 출원보상 : 특허 300,000원 실용신안 100,000원
- 등록보상 : 특허 300,000원 실용신안 100,000원

② 보상실적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11
실용	출원	-	100	-	300	-	700
	등록	-	-	-	-	100	400
특허	출원	1,500	600	1,800	1,400	1,081	2,600
	등록	-	-	2,100	2,700	2,220	300
총액		1,500	700	3,900	4,400	3,401	4,000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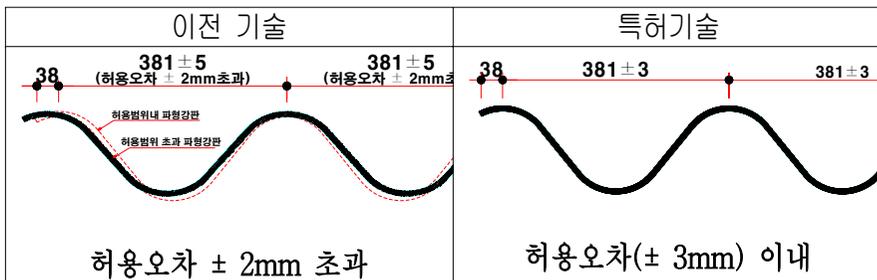
우수 직무발명 사례

① 대칭형 파형강판 (특허 제0761333호)

해외에서도 이음부의 결합 형태 때문에 찢어짐이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대칭형 파형강판은 이음부 형식을 개선하여 찢어짐을 막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유지관리 비용절감등이 가능한 기술력이 향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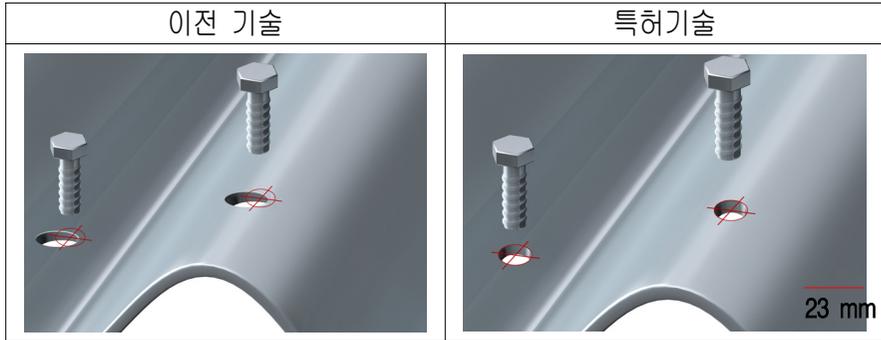
② 파형강판 성형장치 (특허 제0766489호)

파형성형 시 강판의 틀어짐을 방지하고 두께를 고려한 압력을 통한 정교한 파형성형으로 조립오차가 최소화되어 시공성이 향상된 생산 기술로서 정확성을 상당히 향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③ 파형강판 펀칭장치 (특허 제0853966호)

정확한 위치와 완벽한 천공을 통해 파형성형으로 조립오차가 최소화되어 시공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포티스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6-3 포티스빌딩 4층

홈페이지 : www.fortis.co.kr

설립일 : 2006년 9월 1일

대표이사 : 설진영

주생산품 : 디지털방송장비 및 수신기

직무발명 도입년도 : 2009년

주요연혁 : - 2006.09 포티스 설립

- 2007.04 디지털 셋탑박스 첫 출하

- 2007.09 기술벤처기업인증 (기술보증기금)

- 2007.12 1000만달러 수출실적 달성

- 2009.10 INNO-BIZ 인증

- 2009.12 ISO 14001 인증

- 2010.11 이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나. 주요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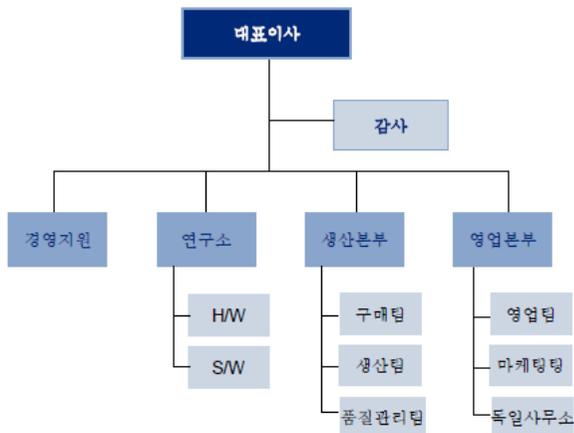


포티스는 디지털방송수신기 수출기업입니다. 앞선 시장분석과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출시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인지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7년 102억원, 2008년 180억원, 2009년 201억원, 2010년 매출 306억원을 달성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약 55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티스는 위성 방송 수신용 셋톱박스, 지상파 방송 수신용 셋톱박스, 케이블 방송 수신용 셋톱박스, 인터넷TV 수신용 셋톱박스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국가, 북미, 남미, 러시아 및 중동국가를 상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 특허전담부서의 설립과 운영

전담부서의 운영



포티스는 별도의 지식재산권 전담조직은 없지만, 영업본부 산하의 마케팅팀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티스에서는 2009년 7월 1일, 개정된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

포티스는 2009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도입한 이래 등록특허 3건, 특허출원 6건 등 총 9건의 지식재산권이 신규 창출되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술개발로 지식재산권 보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직무발명 보상실적 및 보상사례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사례

포티스는 설립된지 얼마 안된 기업의 특성상 많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2009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음과 같은 출원 및 등록과 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① 보상기준

- 출원보상 : 특허 300,000원
- 등록보상 : 특허 1,000,000원

② 보상실적

구분	특허출원 및 등록 보상금
2009년	600,000원
2010년	2,300,000원
2011년	2,800,000원
합 계	5,700,000원

마.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효과 및 매출의 변화

(1) 기술개발의 촉진

포티스는 2009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제정한 이후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매출액의 7%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기술기업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업무과정에서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회사와 종업원이 윈윈하는 기술개발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우수한 인재의 유출방지

포티스는 2006년 5명에서 시작하여, 2011년 현재 7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36명(51%)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PVR 등을 개발, 제조 함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의 중요성은 다른 제조기업에 비하여 높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이러한 연구개발인력의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기준으로 연구개발인력의 이직률은 2.78%(1명 이직)로 매우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3) 매출의 변화

포티스는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51.7%입니다. 특히 직무발명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시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51.7%보다 1% 높은 52.7%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예상매출액 550억 달성시에는 2010년 대비 76%의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성장에 직무발명제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제품 개발단계에서 적절한 동기부여 및 보상은 제품의 품질 향상에 미치며, 이는 곧 매출에 반영된다는 생각이 전사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특허의 경우 2012년 매출에 중요한 솔루션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전략적으로 특허 등록을 위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PVR시장의 고도화, 스마트화에 따른 특허로서 2012년 매출과 직접 연계되는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나라기계제작소 (일본)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일본국 도쿄도 오오타구 쇼난지마 2-5-7

홈페이지 : www.nara-m.co.jp

설립년도 : 1924년

대표이사 : 나라 요리오키(奈良 自起)

사업내용 : 분립체 처리장치의 제조·판매

직무발명제도 도입년도 : 1975년

직 원 : 150명

지식재산 : 특허, 상표 등 102건, 출원 중 36건 (국내·해외), 창

업자 및 현 대표이사 발명공로자로서 포장 수상

주요연혁 :

1924. 나라상점 창립. 기계공구의 제작판매를 개시

1925. 고속도 충격식 분쇄기의 제작 성공

1952. 창립자 나라 지유조오(奈良自由造) 발명공로자로서
포장 수상

1969. 전도전열형구형교반건조기 제작·판매 개시

1980. 고속교반형혼합조립기 제작·판매 개시

1985. 건식·충격식초미분쇄기 제작·판매 개시

- 1996. 초미분쇄기 제작·판매 개시
- 2001. 의약, 식품용GMP 대응분쇄기 제작·판매 개시
- 2008. 나라 요리오기 대표이사 발명공로자로 포장 수상
- 2010. 신세대 분립체 건조기 '부노 히터' 제작·판매 개시

나. 사업내용

나라기계제작소(이하, '나라기계'라 한다)는 초지일관되게 기술 중심적인 '개발형 기업'으로서의 길을 걸어오면서 관련 업계에 분체처리기술과 장비를 제공해 왔다. 나라기계는 오늘 날 전자, 파인 세라믹,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분자 차원까지 물질을 세분화하는 초미립자기술을 이용한 분체, 메카노케미칼 반응을 이용한 신기능 분체 등에 대한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나라기계는 매출의 2~3%를 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지적재산에 관한 비용은 매출의 0.3~0.6%인 1,000~2,000만엔 수준이다. 이것은 매출액 대비 지적재산비용에 있어서, 일본 대기업이 0.2%, 미국 기업이 0.1% 정도이며, 개발비 대비로는 일본 기업이 5%, 미국 기업이 2%인 것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기준).

다. 기술개발의 역사

나라기계의 기술개발의 역사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대 구분	개발자	단위 조직	주요 개발기증	비고
창업시~ 1940년대	선대사장	분쇄·분급	자유분쇄기	85년전에 완성된 분쇄기 현재도 60대/년 매출
			휘저 세퍼레이터	
1950년대~ 1970년대	전 부사장	건조	유동층 건조장치	고도경제성장시대, 합성수지· 합성염계 현재 매출의 주축
			팩들 드라이어 등	
1980년대~ 1990년대	기술개발부 (전 부사장)	혼합·조립	NMG시리즈	기술도입부터 시작
		미분쇄	코스모마이저	산학공동, 이업종 공동개발 소프트와 하드 개발, 용도개발
			마이크로스	
		표면개질	Hybridization 시스템	입자설계(도화선 역할)
2001년~	기술개발부 엔지니어링부 의약기술팀 (프로젝트팀)	소형기 연구기 (의약업계)	NEBULASIZER	의약품 업계로
			Mill Box 시리즈	CONTAINMENT(크린 룸 대체), 해외와의 공동개발
		미립자	Laser Ablation 옵니텍스	나노입자의 생성
2008년~	(프로젝트팀)	다종	다기종	연간 5건 이상의 개발프로젝트

라. 지적재산 경영 현황

① 특허·실용신안 출원전략

나라기계의 지적재산법무실은 각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발명을 적극적으로 출원·권리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라기계의 특허·실용신안 전략은 기술수준에 따른 기술개발전략에 발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대구분	관리자	대리인	특징
창업시~ 1940년대	선대사장	1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보다 실용신안(개량 출원) · 2차대전 전부터 해외출원
1950년대~ 1970년대	전 부사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신안 중심 (기분은 특허, 개량은 실용신안)
1980년대~ 1990년대	전 부사장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중심(개량출원이 적음) · 신기술개발 방법 발명(응도발명) (실용신안법 개정) · 분체 표면개질기술을 중심으로 해외출원 증가
1993년~	법무실 (현 지적재산 법무실)	복수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출원 출원건수를 늘림 · PCT 출원
		선택된사무소 (분야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대응은 명세서 끝자까지 · PCT 출원시 보정(일본국 지정)

②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나라기계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2010. 09. 기준),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중소기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매우 적극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해외				합계			
	출원	등록	존속 기간	계속 중	출원	등록	존속 기간	계속 중	출원	등록	존속 기간	계속 중
특허	162	112	34	11	94	49	26	15	256	161	60	26
실안	123	109	0	0	0	0	0	0	123	109	0	0
의장	10	10	6	0	0	0	0	0	10	10	6	0
상표	52	48	39	1	12	5	2	6	64	53	41	7
합계	347	279	79	12	106	54	28	21	453	333	107	33

③ 직무발명제도 현황

나라기계는 1975년 9월 1일 ‘발명고안취급규정’을 당사 ‘노동 협약’의 일부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했다. 동 규정은 수시로 개정 되어 왔으며, 최종개정은 2005년 11월 1일 일본 특허법 제35조 개정에 발맞춘 것이었다.

나라기계는 신입사원 연수시에 i) 연수의 목적에 대한 설명, ii) 지적재산법무실의 업무 소개, iii) 지적재산에 관한 기초지식 교육, iv) 자사의 특허와 상표의 보유 현황 설명, v) 직무발명제도의 소개, vi) 발명고안취급규정의 포인트 설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나라기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발명고안취급규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직무발명, 업무발명, 자유발명을 정의한다.
- 제6조 (권리의 승계) 제1항에서는 직무발명을 회사가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제12조 (비밀준수의무) 제1항에서는 종업원인 발명자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발명이 특허 등으로 출원되고 출원공개될 때까지 제3자에게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는 퇴직시까지 5년 동안 발명 등의 행위가 직무이었던 자는 퇴직 후 2년간은 경쟁회사 또는 타사의 경쟁사업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제13조 내지 제17조의 2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및 포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보상(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2만엔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1만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실적의 2/1,000 ● 라이선스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대가의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보상(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3만엔+(1만엔×독립항)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3만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대가의 1/10 ● 기타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은 발명자의 기여율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주 발명자의 기여율은 50% 이상으로 인정 - 보상금 지급일은 회사창립기념일(11월 11일)임 	

- 제23조의 2 내지 4에서는 신입사원에 대한 규정의 설명 의무, 규정의 개정 요건,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부 록

직무발명 모델규정

직무발명 보상규정 - SAMPLE(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하거나 해당 발명이 회사발전에 기여한 경우 또는 타사특허의 등록저지, 무효화에 공헌한 경우에 적절한 보상,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종업원의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회사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및 각종 보상, 포상 실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법의 규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 ②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이 한 발명이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임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 2항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종업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 ④ “종업원”이라 함은 직무발명이 완성된 날 현재 회사에 적

을 두고 있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써, 별정직 사원을 포함한다.

제4조 (책임과 권한)

- ① 특허담당 부서장 : 종업원이 제출한 직무 발명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고,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검토, 승인의 책임이 있다.
- ② 특허담당 직원 : 접수된 발명의 제안서의 출원, 등록에 필요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할 책임이 있다.
- ③ 특허 담당 임원 : 직무 발명 심의 위원을 선정하고,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석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④ 직무 발명 심의 위원장 :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한 검토, 승인의 책임이 있다.
- ⑤ 직무 발명 심의 위원회 : 제출된 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보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책임이 있다.
- ⑥ 각 부서장 : 종업원이 제출한 발명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 승인과 특허 부서에 제출 할 책임이 있다.

제5조 (종업원의 의무 및 발명 신고)

- ① 직무 발명을 한 종업원은 지체 없이 그 발명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종업원은 발명의 출원, 이의신청 및 심판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외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 발명의 승계)

① 직무 발명의 승계

- 1) 직무 발명에 대하여는 국내, 외에서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해 발명의 완성일에 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종업원은 해당 직무발명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 2)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이 제 3자와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회사는 종업원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자유발명의 승계

- 1) 종업원은 자유발명에 대한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등록권리 양도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 1 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계 결정된 자유발명에 대해서 회사는 종업원에게 본 규정에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출원포기로 결정된 발명의 처리)

- ① 회사의 명의로 출원하지 않기로 결정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종업원은 자기의 명의로 비용으로 이를 출원할 수 있다. 단, 미완성, 불명료 등을 이유로 출원하지 않기로 한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이를 보완한 때에는 회사에 그 출원을 재의뢰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발명을 회사가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발명에 대한 실시권을 갖는다. 이 경우 회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상의 실시와 출원, 등록에 따른 소요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그 권리의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발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은 회사에 우선적으로 이를 제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원 및 양도의 제한)

- ①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을 회사의 명의로 출원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가 아니면 종업원은 당해 직무발명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종업원이 이미 국내, 외에서 공지 또는 공개된 내용인 줄 알면서도 당해 공지 또는 공개된 내용을 직무발명으로 신고하여 출원되었을 경우, 회사는 당해 종업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직무발명의 출원 유보)

- ① 회사는 직무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의 출원을 유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기로 결정된 발명에 대하여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① 출원 보상금

- 1) 직무발명을 회사의 명의로 국내, 외에 출원한 때에는 회사는 해당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출원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 2) 지급 보상금액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국내 출원	000만원	000만원	000만원
해외 출원	000만원(1國, 1회 한정)		

- 3) 특허 전담부서는 출원번호가 입수되면 보상금 지급을 품의, 확정하고, 각 사업장 특허담당자 및 인사부서로 보상금 지급을 통보하여 각 발명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등록 보상금

- 1) 직무발명을 회사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것에 대하여 회사는 해당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등록에 따른 보상금액은 별도의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 2) 보상금 지급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국내 출원	000만원	000만원	000만원
해외 출원	000만원		

- 3) 특허전담부서는 등록번호가 입수되면 보상금 지급을

품의, 확정하고, 보상금 지급을 통보하여 각 발명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4) 출원 후 실질심사 없이 등록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처분 보상금

- 1)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등록권리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 허여 하거나 권리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회사는 그 발명자에 대하여 등록발명의 양도금, 실시로 수익금 또는 권리행사 수익금(이하 “처분이익”이라 한다)의 일정비율을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2) 제1항의 처분이익은 회사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부터 권리행사의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 3) 보상금 지급

구분	보상금액
처분이익	처분이익 × 10%이내 (총 ○억원 한도)

- 4) 회사는 등록권리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처분이익금이 회사에 입금되었을 때에 그에 따른 보상을 특허부서에 신청한다.
- 5) 처분보상금의 지급은 처분이익이 일정 기간 동안 분할되어 입금된 때에는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금액의 정도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누적 집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 6)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권리평가, 처분이익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④ 이의신청 및 심판보상금 지급

- 1) 종업원이 회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사의 등록 또는 공고된 권리를 무효 시키기 위해 그 증거자료와 함께 특허 전담부서(연구, 품질)에 통보하여 특허전담부서에서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종업원이 타사에서 회사의 등록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침해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특허 전담부서에 통보하여 특허전담부서에서 특허청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 보상금 지급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이의 신청	00만원	00만원	-
이의신청 성공	00만원	00만원	-
무효심판 청구	00만원	00만원	00만원
무효심판 성공	00만원	00만원	00만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00만원	00만원	00만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성공	00만원	00만원	00만원

- 4) 이의신청,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보상금은 특허청에 그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청구이유를 제

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 5) 특허전담부서는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보상금 지급을 품의, 확정하고, 보상금 지급을 통보하여 해당 종업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한다.
- 6) 제1항의 성공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이의신청,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의뢰한 종업원 및 타종업원이 심판 및 이의신청의 성공에 실제 기여한 경우, 그 성공기여 정도에 따라 의뢰 종업원과 타종업원에게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기여이익 보상금 지급

- 1) 기여이익이라 함은 해당 발명이 특허등록 완료되고 해당발명의 기술을 이용하여 회사 매출 및 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 2) 보상금 지급액 경정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써 결정하며, 특허담당직원은 의결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품의 후 해당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 3) 지급보상금은 최다 ○억 원 이내로 한다.

⑥ 보상금 지급방법

- 1) 이 규정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진 지분이 없는 한 각 발명자에게 발명자의 수에 따른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 2) 발명이 출원된 후 발명자의 사망, 퇴사, 전배 등의 사유로 발명자가 아닌 제3자가 발명자를 대신하여 당해

발명의 국내, 외 등록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제3조에 정한 등록 보상금의 1/2를 지급할 수 있다.

- 3) 해당 종업원이 퇴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무발명 보상규정 - SAMPLE (II)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 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전 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 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 : 사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원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
2. 자유발명 : 직무발명 이외의 사원이 한 발명
3. 발명자 : 직무발명을 한 사원

제4조 (권리의 승계)

- ① 회사는 발명자가 한 발명의 실용가치가 있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다.

- ② 발명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일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회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업무관장)

직무발명관리는 직무발명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기획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특허출원 및 등록

제7조 (발명의 신고)

- ① 직무발명을 한 사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자유발명을 한 사원도 전항의 규정에 준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부서장은 그 권리승계 등에 관한 의견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특허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가승계의 결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발명은 특허담당부서장이 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 (권리의 양도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특허담당부서장은 즉시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발명자는 회사가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직무발명인 경우에도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외에는 특허출원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발명자명으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

특허관리부서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신고 되었거나 특허출원사정 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심의회를 소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회사승계여부결정
2. 특허출원 사정 후 회사에서의 사용여부 결정

3. 발명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결정

제13조 (특허권의 등록)

- ① 직무발명으로서 회사에서 가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특허관리부서장은 지체 없이 회사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도 특허등록은 마친 후 이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특허출원사정 후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한다.

제14조 (비밀보장)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자유발명의 승계)

자유발명에 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6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준용)

이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장 보 상

제18조 (보상의 구분)

보상금은 이를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으로 구분한다.

제19조 (출원보상)

- ① 회사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발명마다 출원보상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출원보상의 경우 그 보상금은 특허 관리 부서장이 책정한다.

제20조 (등록보상)

- ①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권리마다 특허 관리 부서장이 책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발명자는 1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발명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분보상)

회사가 특허권을 양도, 사용허여,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리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처분보상금을 특허관리 부서장의 결재 하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허여한 때 : 그 실시수입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 그 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
3. 특허권을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 : 1년간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계속 보상

제22조 (처분통지)

특허관리부서장은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직무발명보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상금의 지급)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4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보상)

- ① 발명자가 이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그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5조 (인사상의 특권)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특허권이 우수하고 실용가치가 큰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그 직무발명자를 특별승급을 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제26조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7조 (구성)

- ① 이 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 위원 4명 및 간사로 구성한다.
- ②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제29조 (성립 및 의결)

이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Q&A로 알아보는 직무발명제도

◆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 종업원이 할 수 있는 발명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종업원등이 할 수 있는 발명에는 ㉠**직무발명** 외에 ㉡종업원등의 직무와는 무관하지만 사용자등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있는 발명인 ‘**업무발명**’과 ㉢종업원등의 직무 및 사용자등의 업무와 무관한 발명인 ‘**자유발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발명의 종류를 나누는 이유는 직무발명의 경우에만 사용자등에게 법정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권리의 예약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발명과 자유발명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무발명제도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발명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종업원등이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가능한 발명의 구분



제가 완성한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이대리님에게 요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입니다. 이대리님의 과거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도 직무발명이 됩니다.

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발명이라면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입니다. 자유발명의 경우는 발명자가 자체적으로 특허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자유발명



● 직무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업원등이 완성한 발명이라고 해서 모두 직무발명인 것은 아닙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종업원등’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업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공무원도 이에 해당됩니다. 상근과 비상근을 가리지 않으며 임시직원³⁾도 종업원에 해당하지만, 고용관계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직무’란 사용자등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상의 임무를 말합니다.

나.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사용자등’이란 일반적으로 회사를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시키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업무범위’란 사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범위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넓게 해석하여 사업수행상 직접 관계가 있는 발명은 모두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3) 이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의상 ‘종업원등’을 ‘직원’으로, ‘사용자등’을 ‘회사’로 표현하겠습니다.

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발명을 의도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발명은 성립하지만,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등의 직무가 아닌 경우는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예: 일반사무직 직원이 한 발명).

한편,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종업원등이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⁴⁾



종업원의 발명일 것

- 종업원: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지칭. 상근 비상근을 묻지 않으며 촉탁직원이나 임시직원도 포함하나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함
- 직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 사용자: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지칭
- 업무범위: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
- 법인의 경우 사업범위는 정관을 기초로 해석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 종업원의 직무: 발명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나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님
-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종업원의 직무는 현재의 직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내에서 과거에 수행한 직무도 포함

4) 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113 판결

● **사내창업자가 발명을 한 경우, 원 소속회사의 직무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는 X회사이고, 피고는 Y1(회사)과 Y2(개인)이다.
- 피고 Y2는 X회사(원고)에 입사하여 Y1을 창업하였고 현재까지 X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 Y2는 2005년 10월에 X회사의 사내창업규정에 따라 Y1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내창업을 이유로 2005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 X회사를 휴직하였다.
- 2006년 3월 22일 Y2는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받았고, 2009. 03. 11. Y2는 Y1에게 위 특허를 양도하였으며, X회사는 Y1과 Y2를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 등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 Y2는 사내창업 휴직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위 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도 산입되지 않으며, X회사는 위 기간 동안 Y2에게 실질적인 지휘 내지 명령권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의 특허는 X회사의 직무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⁵⁾

5) 대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그 회사와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피고 회사(Y1)에 입사하기 전에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고안을 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자이고, 공동피고인 Y1은 회사이며 Y2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Y1 회사 및 Y2는 X에게 체인을 코팅하는 기계장치의 제작을 의뢰하고 Y1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계약하였다.
- X는 고안을 완성하고 Y1과 공동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 X는 Y1 회사의 공장장으로 입사했고, 본인의 지분을 Y1회사에 이전했지만, 그 후에 X는 Y1 회사를 퇴사하였다.
- X는 Y1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고안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그 고안이 Y1 회사에 승계되었으므로, Y1 및 Y2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고안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발명된 것이므로 이 고안이 직무발명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Y1 회사와 X사이에 기계장치의 개발의뢰 계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용계약이 아니었고, 그 후에 X가 Y1 회사에 입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고용계약이므로 X의 입사 전에 완성된 발명을 Y1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⁶⁾

● **통상적인 관리업무만을 수행한 사람이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Y)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Y는 주식회사이다.
- X는 부하직원들에게 이 사건 발명들에 대한 개발에 착수하도록 지시하고 그 기술개발의 진행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발명이 완성된 후에는 담당 기술자 등과 공동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발명자로 기재되었다.
- 이 사건 발명들이 등록된 후에 X는 피고 회사(Y)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개발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팀장으로서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 특허발명에 대한 기여요소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통상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하는데 그쳤을 뿐이고, 당면한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X)는 이 사건 발명의 진정한 공동발명자라고 볼 수 없으며,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발명을

6)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가합2717 판결

완성한 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Y)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⁷⁾

◎ 특허부서 직원이 발명신고서의 청구항을 수정하고 일부 도면 등을 수정하여 특허출원을 명확히 한 경우 공동 발명자라고 할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피고 회사(Y)의 특허부서에서 연구원 등의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는 Y주식회사이다.
- Y회사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발명자 A가 이 사건 발명을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의 일부가 Y회사 특허부서를 거치면서 X에 의해 수정되었다.
- 그 후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Y회사가 특허권을 취득하자 X는 피고 회사(Y)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원고(X)가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X가 실제 발명자로 추정된다고는 할 것이지만,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X는 단지 이 사건 발명의 특허출원업무의 진행과정에서 발명자 A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 사건 양도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므로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만약 실제로 X가 이 사건 발명신고서의 청구항을 수정하고

7)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6나62159 판결

일부 도면 등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X를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X가 피고 회사(Y)를 상대로 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⁸⁾

● 행정업무만 담당하던 공무원이 발명에 참여한 경우,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광역자치단체이며, 피고(Y)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국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 공무원인 Y와 공동고안자인 A는 이 사건 고안을 자유제안의 형식으로 원고(X)에 제안하여 포상을 받았고, 그 후 Y는 A와 함께 출원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 한편, A는 Y와 상의 없이 원고(X)에게 직무발명 신고를 하였고, 원고(X)는 직무발명보상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고안을 승계하기로 의결하고, Y에게 Y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도록 요구하였다.
- Y가 원고(X)의 지시를 거부하자, 원고(X)는 Y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지분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8)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나. 결론

법원은 해당 고안이 원고(X)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발명이기는 하나, 공무원 Y가 고안을 하게 된 행위가 Y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Y의 직무수행 내지 직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Y가 근무한 부서에서의 구체적인 업무는 대부분 민원, 행정관리업무였고, Y가 이 사건 고안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었으며, Y와 A가 자신들의 비용으로 업무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고안을 완성한 점, Y와 A가 위 고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원고(X)로부터 업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Y가 담당한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이 사건 고안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X)의 지분이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별도의 규칙에 의해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를 벗어나는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그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⁹⁾

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가합9775 판결

◆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권리와 의무

●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 인가요?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등은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발명을 완성시킨 종업원은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보상을 받을 권리 ③ 발명자 게재권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고, ④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무 ⑤ 비밀유지의무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완성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됩니다.¹⁰⁾

나. 보상을 받을 권리

종업원등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¹¹⁾

10) 특허법 제33조 제1항

1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보상에 대하여 회사와 직원간의 고용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 그 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과 ㉡ 그 발명의 완성에 회사와 직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¹²⁾ 이러한 규정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직원이 보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발명자 게재권

직무발명을 완성시킨 직원은 특허출원, 출판, 논문 등의 문서에 발명자로서 이름이 게재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발명자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발명자로서의 게재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라.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무

직무발명을 완성한 직원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에 참여한 직원의 공동명의로 회사에 완성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¹³⁾ 이는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회사가 쉽게 파악하여 발명의 안정적인 승계와 기술유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1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13) 발명진흥법 제12조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에 대한 통지가 인정되는 시점은 완성사실을 담은 문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도달주의). 직원은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서면 외에 전자문서(이메일, 전자결재 등)에 의한 통지도 문서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이유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수 있는 회사와 직원간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를 명확히 남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 비밀유지의무

직원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됩니다.¹⁴⁾

만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¹⁵⁾

14) 발명진흥법 제19조

15) 발명진흥법 제58조



● 사용자등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 연구시설, 연구지원, 기술전수, 교육,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갖지만 직원에게 소정의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가. 법정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원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거나 직원으로부터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은 경우, 회사는 그 특허 등에 대하여 법정통상실시권을 갖게 됩니다.¹⁶⁾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시킴에 있어서 회사가 일정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법정의 권리입니다.

나. 예약승계를 통한 권리취득

회사는 직원이 앞으로 완성시킬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직원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예약승계계약이라고 하며, 직원이 회사에 입사할 때 고용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예약승계계약을 맺음으로서 성립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발명 중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미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회사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

16)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¹⁷⁾

만약 직무발명이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제삼자와 공동으로 완성된 경우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으면 회사는 그 발명에 대하여 해당회사의 직원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¹⁸⁾

다. 동의할 수 있는 권리

직원이 특허권을 등록받은 경우, 회사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은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¹⁹⁾

라.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여부 통지 의무

회사는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통지한 직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문서로 회신해 주어야 합니다.²⁰⁾ 회사가 승계하기로 회신할 경우,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²¹⁾

17)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18) 발명진흥법 제14조

19) 특허법 제119조 제1항, 제136조 제7항

20)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21)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만약, 회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직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회사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발명을 한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²²⁾

따라서, 직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완성사실을 통지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승계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할 경우, 회사는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승계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조차도 종업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

예약승계에 의하여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²³⁾

또한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뒤 출원을 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²⁴⁾

22)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23)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24) 발명진흥법 제16조



◆ 예약승계규정

●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직원의 직무발명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의 승계여부는 종업원등과 사용자등간의 개별계약에 따라 처리되지만, 사용자등은 적어도 특허권 등에 대하여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회사는 그 권리의 승계를 요구할 수는 없고 법정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가.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의 취급

<p>승계의사 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 종업원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 	<p>승계의사 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p>승계여부 미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종업원 동의하의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	---	--

나.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의 취급

<p>종업원 등의 양도의사 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p>종업원 등의 양도의사 有 (사용자 등의 양수의사 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 종업원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
--	---



● **구체적인 예약승계계약이 없더라도 회사의 직무발명제 안지침이 있었다면 예약승계규정으로 볼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피고(Y)는 원고 회사(X)에 입사하여 2008년 퇴직하였다. Y는 X회사에 재직 중에 담당 업무에 관한 이 사건 특허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 X회사는 Y와 직무발명에 관한 예약승계계약을 하지 않았고, Y의 입사 당시 고용계약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 X회사는 2000년부터 '회사는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직무발명에 관한 제권리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직무발명제안지침을 사규로 정하였다.
- X회사는 그 동안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Y에 대하여 Y가 취득한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지분이전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예약승계규정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명시적인 예약승계계약이나 고용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나, 2000년부터 X회사는 직무발명제안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였고, 2003년부터 Y가 퇴사한 2008년까지 5년 이상 Y가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포상을 하였고, Y도 역시 자신

이 완성한 대부분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X회사에게 권리를 승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자 간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에 대한 Y의 지분을 X회사에 이전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²⁵⁾

● 직원이 완성한 모든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 규정이 유효한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광역자치단체이고 피고(Y)는 그 소속공무원이다.
- Y와 공동고안자인 A는 이 사건 고안을 자유제안의 형식으로 원고(X)에게 제안하여 포상을 받았고, 그 후 Y는 A와 공동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 A는 Y와 상의 없이 원고(X)에게 직무발명 신고를 하였고, 원고(X)는 Y에게 Y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Y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자 Y를 상대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지분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결론

원고(X)의 공무원제안규칙 제28조에서 ‘시장이 공무원제안을 통한 발명이나 고안 등을 채택하는 경우, 그 발명이나 고안 등에 대하여 권리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제안제도의 취지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

25) 대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115791 판결

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칙이 공무원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직무발명이나 직무고안 등에 한하여 권리가 승계되는 것으로 한정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²⁶⁾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완성한 모든 발명에 관한 승계규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규정 전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직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부분은 유효하므로 직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은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

◆ 보상금의 산정과 지급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유형

일반적으로 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보상)의 종류로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이 있으나, 보상금 종류 및 보상금액 등은 사용자와 직원이 협의하여 정하고,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사용자는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2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가합9775 판결



가. 발명(제안)보상

발명제안보상은 종업원 등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종업원등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입니다.

나. 출원보상

출원보상은 종업원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등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입니다.

출원보상은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지만, 특허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출원 배제의 효과와 출원공개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다. 등록보상

사용자등이 승계한 발명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되었거나 특허등

록되어 권리를 확보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라. 실시보상

사용자등이 출원 중인 발명 또는 특허 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등이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 처분보상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받는 보상으로 실시보상과 마찬가지로 처분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 출원유보보상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사내노하우 등으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으로서, 이 경우 보상의 액은 당해 발명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종업원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²⁷⁾

사. 기타 보상

이 밖에도 출원발명의 심사청구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심판에 참여하여 그 권리를 무효로 한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시에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습니다.

27) 발명진흥법 제16조

회사에서 저의 노력을 인정해줘서 기분이 좋네요!
아직 저의 발명이 제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만약 '대박'이 난다면 더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직무발명 보상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①출원(등록)에 대한 포상인 '출원(등록)보상'
②발명이 적용되어 매출신장이 발생했을 때 주어지는 '실시보상' 등이 있습니다.
이 대리님의 발명이 '대박' 제품의 탄생에 상당히 기여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실시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출원(등록)보상

실시
보상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피고 회사(Y)에서 개발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 X는 Y회사 재직기간 중에 발명을 완성하였고, X가 완성한 직무발명들은 Y회사로 승계되었으며 Y회사가 이를 출원하고 등록받아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 Y회사는 X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X는 Y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X가 한 발명이 직무발명임을 인정하고, Y회사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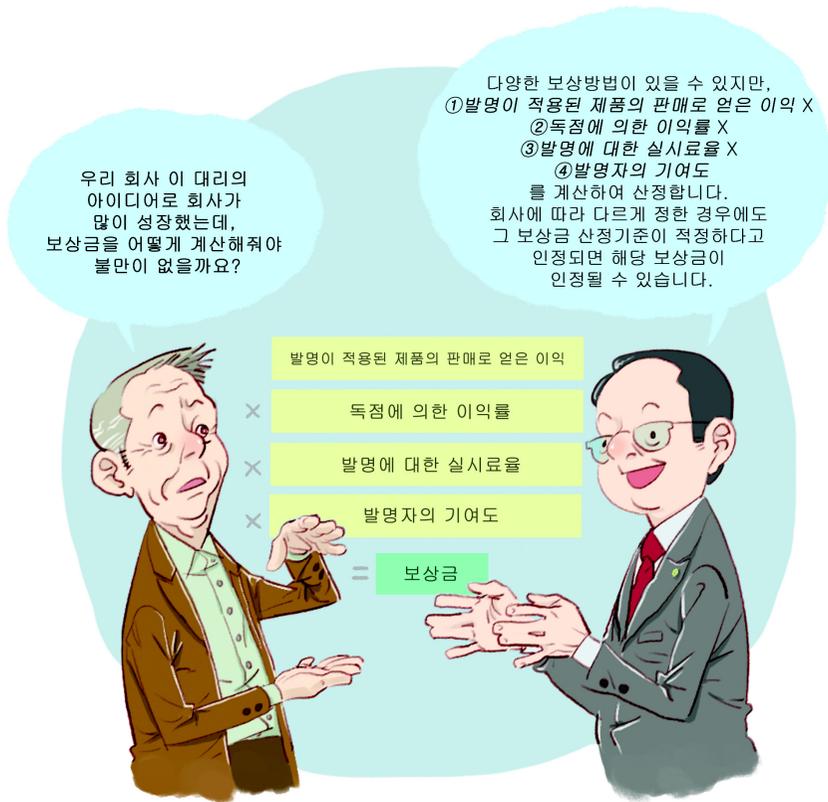
보상금에 대해서는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²⁸⁾

28)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4가합22 판결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 A×B×C×D]

- A :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
- B :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률
- C :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 D : 원고의 기여도



● 임금이나 성과급 등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갈음할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1998년 피고 회사(Y)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년 4월에 퇴사한 자이다.
- X는 Y 회사에 재직 중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고,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Y회사에게 양도하였다.
- Y회사는 위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는데, X는 Y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법률은 강행규정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행사 및 보상금의 정당한 액수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은 무효이고,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기 사건에서 Y회사가 X와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X에게 Y회사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약 1억 2400만원 상당을 자문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주었으며 성과급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²⁹⁾

또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직무발명의 완성대가로 임금을 인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급여에 관한 것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과는 다른 성격의 채권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³⁰⁾

◎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업무가 다른 회사로 양도(M&A)되었을 경우, 이전 회사에 근무할 때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새로운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X)는 공동피고인 Y1 회사에 재직 중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Y1 회사에 양도한 자이다.
- Y1 회사는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고, Y1 회사는 무선 단말기사업부분에 관한 자산, 채무, 영업비밀, 계약상 지위 등을 Y2 회사에 양도하였으며, X는 Y2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나. 결론

위와 같은 사건에서 X는 Y1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정하고 있는 '처분보상'의 규정에 따라서, Y1 회사가 Y2 회사와 체결한 양도계약에 따라 특허권을 양수한 Y2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라이선스하여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X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Y2 회사는 Y1과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무형

29) 대법원 2009. 10. 7. 선고 2009나268409 판결

30)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316 판결

자산 중 일부러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만을 인수하였을 뿐 X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보상금 채무는 인수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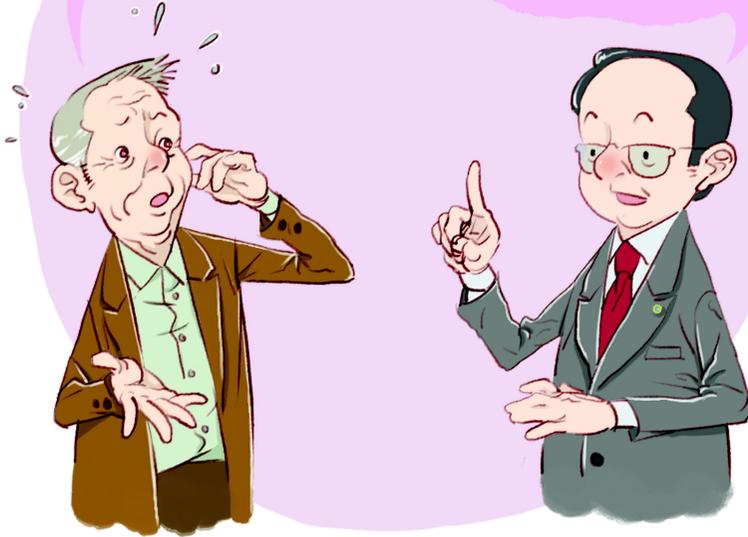
법원은 이에 대하여 X로서는 Y1, Y2가 이 사건 각 특허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실시료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처분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자명하므로, X의 이 사건 보상금 청구권은 계속적인 라이선스 발생 이후에 비로소 행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X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X가 Y1 회사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Y1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 정한 각 사유에 따른 개별적인 보상금 청구권은 각 사유의 발생시점에 함께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Y1 회사와 Y2 회사의 양도기준일(2001. 4. 30.)을 기준으로 양도기준일 전에 발생한 보상금은 Y1 회사가, 양도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보상금은 Y2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에 있던 김 과장이
퇴사 후에 우리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였는데...
애매하네요.
이런 경우도 우리 회사가
일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문제가 많은 경우죠.
발명이 김 과장의 재직 중 완성된 것이라면
김 과장이 퇴직 후 출원하더라도 직무발명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완성된 발명은 원칙적으로는
직무발명이 아닙니다.
발명의 완성시점이 퇴직 전, 후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퇴직 후 몇 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발명은
전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추적조항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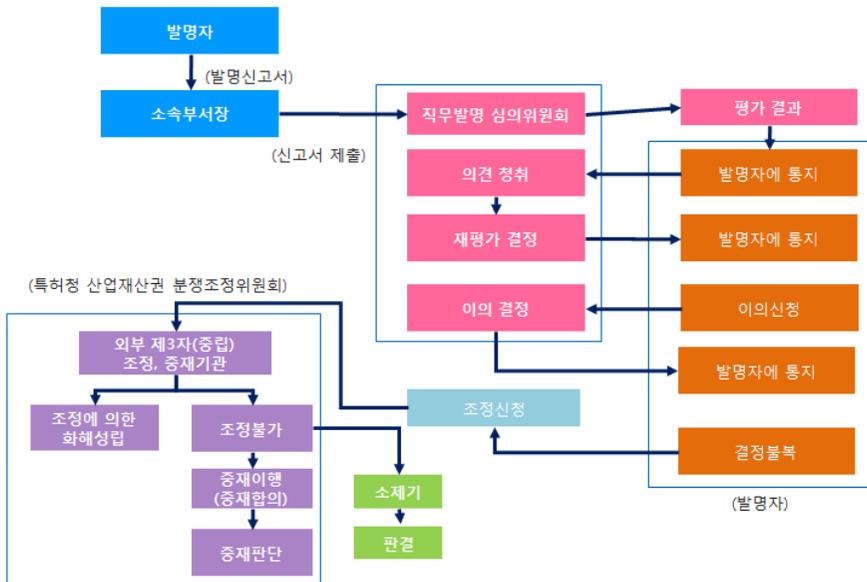


◆ 직무발명을 둘러싼 다툼의 해결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상금 청구권은 사법(私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등을 두어 발명자 직원과 회사 간에 송사(訟事)가 발생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기 전에 특허청에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혹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전에 회사의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회사에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허청에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불만 해결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내 직무발명
관련규정 숙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개최



● 직무발명 보상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의 발단은 결정된 ‘보상액’에 대한 발명자인 종업원등의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먼저 보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단계에서 사용자등이 결정한 보상액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설명에서 직무발명규정의 적용,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액, 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등이 한 부담, 공헌 및 종업원등의 처우, 자사 및 타사에서의 종래의 사례, 기타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발명자인 종업원등은 발명 그 자체의 기술적 평가가 높은 것에 비례하여 반드시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발명을 제품화하고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의 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발명자가 스스로 그 발명을 사업화하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보상액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된 보상액에 관하여 종업원등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의 불씨가 되는 불만에 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그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복신청에 관하여 심의할 사내기관을 마련해 두고, 그 기관에는 중립·공정을 기하기 위해 또는 종업원등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직원과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기에 최적의 제도군요! 하지만, 직원들이 완성한 발명의 가치와 회사가 생각하는 해당 발명의 가치가 다르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예방책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문제는 '보상액' 때문에 발생합니다. 보상액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발명을 제품화하기까지 회사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같은 사내기관을 마련해두고, **변리사를 초빙**하여 객관적인 액수에 관한 조언을 듣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법원에서 하는 흑백을 가리므로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항소, 상고라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어 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제출된 주장과 입증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완전한 입증을 한다는 것이 당사자에게 용이한 일은 아니며, 사용자등의 공헌도, 발명자 측의 공헌도와 같은 대응하는 요소의 판단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어떤 평가방법으로 정하는가 라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의 예측, 보상액의 예측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 소송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회피하고, 사태 해결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해결에 이르는 지름길이 소송에 의한 승패만은 아닙니다. 회사는 발명자인 직원을 이해하고, 직원은 회사를 신뢰한다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내고, 서로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함으로써 보상액을 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상 결정을 위한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진다면, 분쟁의 예방이 가능하며, 설사 발생하였다고 해도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기타

●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한 직무발명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가 됩니다. 다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됩니다.³¹⁾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이 국가 등에 승계된 경우에도 역시 승계한 측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³²⁾ 그리고 국유가 된 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는 특허청장이 관장합니다.³³⁾

● 퇴직 후 발명 또는 출원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직원이 회사를 퇴직한 후의 발명 또는 출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문제가 많이 됩니다. 퇴직 후 발명은 원칙적으로는 직무발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명이 재직 중에 완성된 것이라면 퇴직 후에 출원하더라도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퇴직 후에

31)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3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

33) 발명진흥법 제10조 제4항

완성된 경우라도 그 발명의 상당 부분 또는 주요 부분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의 완성시점이 퇴직 전인가 후인가의 판단은 매우 곤란하므로 그에 관한 대비책으로 퇴직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발명은 종전의 사용자등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규정, 이른바 추적조항(追跡條項)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구적인 추적조항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추적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민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직무발명제도 관련 법규

직무발명제도 관련 법규

◆ 직무발명 관련 규정

가. 발명진흥법

(2011. 3. 30. 시행 법률 제10489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 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

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³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34)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발명 심의기구)

-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심의기구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대표, 제26조에 따른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이나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벌칙)

-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2012. 1. 6 시행, 대통령령 제2348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2011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작성

감	수	산업재산정책국	국 장	이영대
		산업재산진흥과	과 장	김기범
		산업재산진흥과	사무관	최정봉
작	성	특허법인 우인	변리사	최성우
편	집	산업재산진흥과	주무관	오용균
		한국발명진흥회	차 장	허동욱
		한국발명진흥회	주 임	이민희

■ 발 행 _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한국발명진흥회

■ 발 행 일 _ 2011년 12월